

	대학안전관리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8. 25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행정지원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내의 재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대학의 자산과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 시설 및 장비와 구성원들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재난 :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 등 구성원의 생명과 대학의 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.
2. 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대설, 낙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.
3. 안전관리 : 재난·재해 및 질병 등으로부터 구성원의 생명, 신체 및 대학 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2장 조직과 직무

제4조(조직) ①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조직을 운영한다.

1.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총장으로 하고, 총괄부책임자는 행정지원처장으로 한다.
2. 각 건물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학과의 학과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.
3. 교육 및 연구용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학과 학과장으로 하고, 부책임자는 담당교수로 한다.

②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안전관리자) 대학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수의 안전관리자를 두며,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각 종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예방조치
2. 안전장비 등 위해방지시설 및 장비의 성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정비
3.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
4. 재난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처방안 수립
5. 안전에 관한 안전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

6. 기타 구성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

7. 관련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

제6조(업무분장) ①재난 및 재해 관련 안전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과에서 담당하며, 총괄부 책임자인 행정지원처장이 관리·감독한다.

②수업, 연구, 실험실습 관련 안전관리업무는 산학취업처에서 담당하며, 산학취업처장이 관리·감독한다.

③재난·재해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
호	구분	업무내용	담당부서	비고
1.	재난재해 총괄업무	㉠재난 재해 발생 시 관리 총괄 ㉡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㉢안전관리 매뉴얼 관리 운영 ㉣교육 및 훈련 실시 ㉤안전관리규정 관리 ㉥안전관리위원회 운영	시설관리과	안전관리규정
2.	시설물관리	㉦안전점검과 복구 ㉧시설물 안전관리	시설관리과	시설물유지 관리규정
3.	연구실, 실험실습실 관리	㉨연구실,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기본 계획 수립 운용	산학취업처	연구실안전 관리규정
4.	방사선관리	㉩방사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운용 ㉪방사선 안전관리업무 수행	산학취업처/ 방사선안전관리자	방사선안전 관리규정
5.	질병관리	㉫전염병 예방 기본계획 수립 운용 ㉬환자관리 및 방역기관과 협조	건강증진센터	건강증진센터 규정
6.	보안시스템 관리	㉭보안시스템 관리 운영 ㉮보안회사와의 협조	행정지원처	
7.	정보보안 관리	㉯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 ㉺해킹 방지 업무	정보관리소	정보보안규정

제3장 안전관리 교육

제7조(대상 및 방법) ①교육대상자는 대학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, 교육 및 훈련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한다.

②정기교육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, 수시교육은 신규 직원에게 실시하거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실시한다.

③재난·재해 안전관리교육은 시설관리과 주관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,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교육은 산학협력처 주관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세워 학과장 및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
제4장 안전관리위원회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.

1. 제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· 의결
2. 재난 · 재해사태(예방 및 복구) 관련 사항 협의
3. 기타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활동

제9조(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지원처장, 기획처장, 학사지원처장, 산학취업처장, 정보관리소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사무를 총괄한다.

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시설관리과장이 된다.

제10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회의) ①회의는 재난 · 재해 발생 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4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5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

제12조(사고조사 및 보고) ①재난 ·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시설관리과장은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,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상황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,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사고내용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13조(복구) 사고 내용에 따른 주관부서는 피해현황을 파악하고,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제14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6장 시설물 안전관리

제15조(시설물 안전관리) ①대학 내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.

②재난 · 재해 및 대학 내 시설물 안전관리는 행정지원처장이 담당한다.

제7장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

제16조(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) ①수업, 연구, 실험실습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실험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.

②수업, 연구, 실험실습에 관한 안전관리는 산학취업처장이 담당한다.

제8장 방사선 안전관리

제17조(방사선 안전관리) ①방사능 누출사고 예방과 방사능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.

②방사선안전관리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담당한다.

제9장 질병 예방관리

제18조(질병 예방) ①질병 예방과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센터규정에 따른다.

②구성원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관리는 건강증진센터장이 담당한다.

제10장 정보 보안관리

제19조(정보보안관리) ①대학의 모든 전산 정보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,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정보보안규정에 따른다.

②대학의 모든 전산 정보 보안관리는 정보관리소장이 담당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